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북문화관의 활용(안 제4조)
 - 문화예술작품의 전시,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등
-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규정(안 제5조, 제6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관리 규정 마련(안 제15조)
- 기타 소장품 보관 관리 등(안 제10조~제14조, 안 제17조~제20조)

4. 검토의견

이번에 제정하는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개관을 앞둔 충북문화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충북문화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함.

주요내용으로는

1.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제4조~제10조)
2. 자료열람과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제13조, 제20조)
3.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제14조, 제18조)
4.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제15조, 제17조, 제19조)을 두고 있음

이 조례안은 충북문화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북문화관은 민선5기에 들어 도지사 관사를 도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공약사항에 따라, 2011년 7월 구(舊)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북도민들과 신진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충북문화관’으로 개관하기로 한 것으로 권위주의의 탈피와 문화복지의 향상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것임.

이번 조례안 제정은 충북문화관 운영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관리에 기여하여 관사 개방의 상징성을 살리고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위탁 기간, 위탁시 지도·감독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

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함.

붙임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1부. 끝.